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97
----------	-------

발의연월일 : 2025. 8. 21.

발의자 : 추경호 · 김위상 · 나경원

이달희 · 김상훈 · 성일종

이현승 · 정동만 · 박성민

김정재 · 서지영 · 김기현

권성동 · 이종배 · 권영진

고동진 · 최은석 · 박성훈

의원(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자 등이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65세 이상인 자의 자산 형성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